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안내

고용노동부개정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의해
2018.09.11.자로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장실습 선발학생들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주셔야 하며 관련내용 안내드립니다.

(적용대상)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자 (통칭 현장실습생)

(가입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근로자고용신고서」 제출 (일반근로자의 고용신고와 동일)

- 서식 작성 후 팩스 등으로 가입가능
- 온라인 신청가능(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http://total.lcomwel.or.kr>)
- 보험료 부과 구분: '현장실습생' 체크
 -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협약서로 대체)
- 실습기간 기입
 - ※ 실습시작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함

(보험료)

현장실습생에게 직접지급하는 실습지원금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

- 실습지원금이 0원인 경우 근로자고용신고서에 지급액 0원 기입
 - ※ 지급액이 0원인 경우 산재가 발생하여도 최저임금에 준하여 보상처리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휴업급여 및 병원비

-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고용,국민,건강 가입필요X)
-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의 경우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음. 따라서 실습종료 후 산재보험 종료 시, 일반근로자처럼 이직, 퇴사 등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실습지원금을 발전기금(학교를 통한 장학금으로 지급)처리 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자고용신고서 지급액에 0원 기입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실습시작 후 14일 이내 가입하셔야 하므로 실습지원금 처리방법 (직접지급, 발전기금처리)를 협약서 작성 시 꼭 체크하시어 산재보험료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관련 내용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상해보험은 필수로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개정고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실습기관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요청드리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기타 산재보험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담당지역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부탁드리며, 위의 안내기준에 따른 산재보험 1가지만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고용신고서> 하단 서식 참조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V]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	----------------------------------

[illegible]
$$\frac{1}{\sqrt{2}} \quad \frac{1}{\sqrt{2}} \quad \frac{1}{\sqrt{2}}$$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제2쪽)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유의사항

건강 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 월 납부 희망"의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지역연금 부호]

1.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종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 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산재 보험	임금채권 부담금	실업 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급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065 치료사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4 승무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직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 전기·전자 관련직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92 전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직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직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직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204 웹 전문가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093 자동차 운전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직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154 자동차정비원 155 급형 및 공작기계 조직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직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직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조립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14 식품제조 기계 조직원
03. 금융, 보험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02 부동산 중개인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04 계산원 및 대표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사원	16. 재료 관련직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62 판금, 제관 및 새시 관련 종사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164 용접원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직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직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직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직원(상하수, 소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직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직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직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12 경비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15 계기검침, 수급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 화학 관련직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직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231 작물재배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82 섬유제조기계 조직원	
051 법률전문가 052 법률관련 사무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06. 보건·의료 관련직			
061 의사 062 수의사 063 약사			



근로복지공단

수신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단장

(경유)

제목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는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실습생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 적용 범위가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생으로 한정되어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고용노동부고시를 개정하여 대학생 현장실습생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는 바, 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에 의한 현장실습생도 '18. 9. 11.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위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이 널리 홍보되어 실습생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귀 대학 현장실습생 및 현장실습 사업장에 다음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사항>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 (적용 대상)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
 - ※ 직업계고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의한 현장실습생 등을 포함한 모든 현장실습생으로서 시행일('18.9.11) 이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사람(시행일 현재 현장실습 중인 사람 포함)
- (가입 방법)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일반 근로자의 고용 신고와 동일)
- (보험료) 현장실습생이 받는 모든 금품에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로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
-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등(일반 근로자의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

끝.